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8,368,663	8,651,060
일반회계	216,306,713	6,489,201
특별회계	72,061,950	2,161,859
공기업특별회계	7,581,497	227,445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581,497	227,445
기타특별회계	64,480,453	1,934,4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291,494	188,74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0,072	14,702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68,422	26,053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3,767,631	713,02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042,028	331,26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149,404	184,482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157,570	64,727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196,729	395,902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05,369	12,161
기반시설특별회계	111,734	3,35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10,87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